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인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기인하여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로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하고, ‘15년부터 운영 중인 건축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상담·처리 업무를 전산화한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령 별표1 제2호)

- 1) 기 규정된 기숙사 용도를 호실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학교 또는 공장을 위한 ‘일반기숙사’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로 구분
- 2)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

나.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 마련(령 제119조의4

제5항 신설)

건축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상담·처리 업무를
전산화한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를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4의 제목 중 “분쟁조정”을 “분쟁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등의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상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숙사(호실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2) 공동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하여 적정 공동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20실 이상 임대운영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건축주가 개정규정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절차를 거쳐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의4(<u>분쟁조정</u>) ① ~ ④ (생 략) ⑤ <신 설>	제119조의4(<u>분쟁조정 등</u>)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등의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 · 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상 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을 이용 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 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